

» 신청 대상

위험기계 교체 ① 이동식크레인 ② 고소작업대 ③ 리프트 보유 사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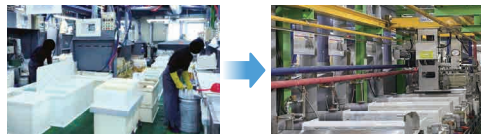
[위험기계 교체]

구분	① 이동식크레인	② 고소작업대	③ 리프트
생산 시점	'09.9.30.까지 출고된 차량	'09.6.30.까지 출고된 차량	제한 없음
제작 형식	카고형	차량탑재형 (절연, 통신 포함)	권동식
교체 조건	'20.12.31.까지 소유한 자에 한정		신청자 소유 공장에 한정
지원 대상 설비	 카고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권동식 리프트

뿌리공정 개선 ① 전문 뿌리업종 사업장 ② 뿌리공정 보유 사업장

[뿌리공정 개선]

- ①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뿌리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 ② 제조업 사업장 중 뿌리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을 보유한 사업장으로 해당 뿌리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



참여 제한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참여를 제한함

-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휴·폐업 중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 법 제158조제4항에 따른 제한기간 중인 자



<https://anto.kosha.or.kr>

안전투자 혁신사업

» 사업 개요

사망사고 발생강도와 빈도가 높은 위험기계·기구와 노후되거나 유해·위험한 공정의 개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투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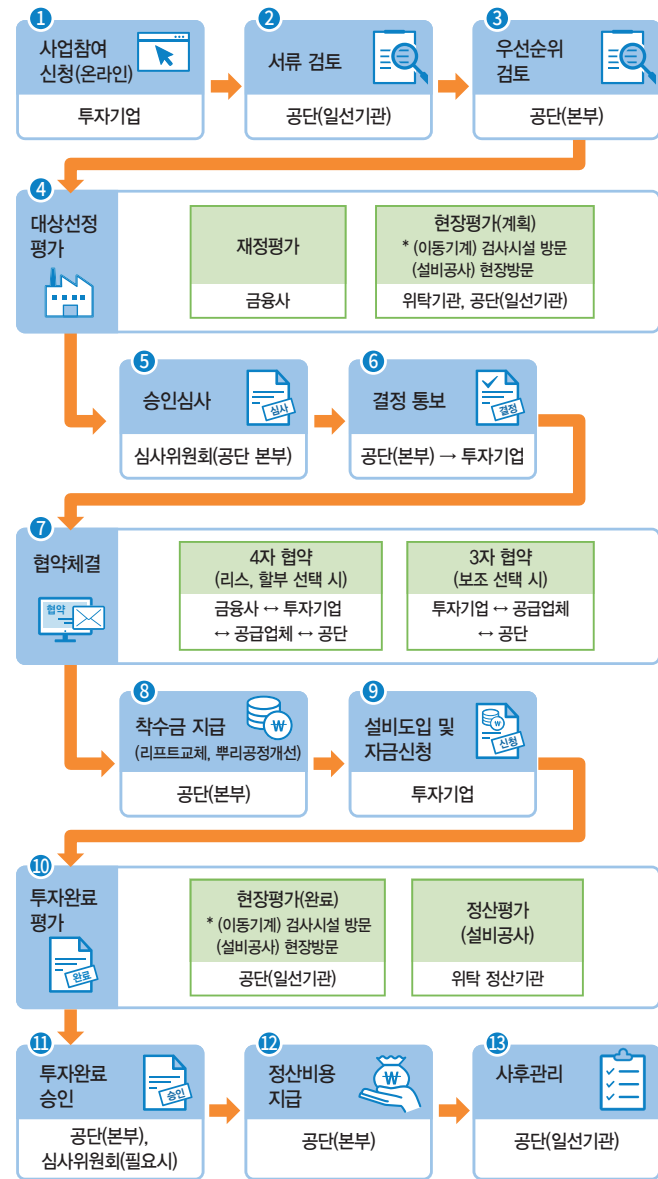
- ① 이동식크레인 등 3종 기계는
 - » 10년 이상 경과된 안전인증 미실시 제품이 다수, 이동(移動)형 운영 특성으로
 - » 오랜 기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
- ②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 뿌리산업은
 - » 사고사망 및 질병사망 만인율이 높고,
 - » 산업의 노후화와 경쟁력 상실이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

» 지원 범위

- 설비 제작비 등 사업비 50%(1억원 한도)
- [사업비 등 지원 범위 및 조건]
- ▶ 사업비(50%): 기계·설비 구매, 제작 및 설치비, 기존 설비 해체비용

구분	①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교체	② 리프트 교체	③ 뿌리공정 개선
교체용량	보유 용량 대비 교체 용량 한정 없음		
지원금액	옵선과 관계없이 시장가격의 50% *시장가격은 '21년도 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	최종 위탁 정산 금액에 따라 지원	
지원대상	이동식장비 실소유자 대상 *임대 및 지입차주 등 참여 가능	해당 설비가 설치된 공장 등 소유주	

» 사업 흐름도



1 사업 신청 및 접수

» 사업 신청

- 신청사업장(투자기업)은 제출서류 일체를 준비하여 종합지원시스템(<https://anto.kosha.or.kr>)에서 신청



* 홈페이지의 사업 공고문 참조

- 문의처 : 1644-4555

제출 서류

공동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산재안납증명원 (발행 후 3개월 이내)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행 후 3개월 이내)
- 건축서
- 정보활용동의서

위험기계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사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위수탁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상 현물출자 위수탁 차량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 기계장치 명판 사진 또는 제작증명서(기계장치 명판이 훼손되어 모델명 및 제작연월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 차대번호 사진(사고 등으로 차대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설비공사 (리프트, 뿌리공정)

- 사업계획서
※ 뿌리공정개선 사업계획 주요 내용 : 사업목표, 개선내용, 소요예산, 자부담 방안(리스, 할부, 보조 중 선택)

2 사업 수행 대상 선정

» 지원 우선순위 검토

- 공단은 안전투자 혁신사업 공고의 해당 차수 접수기간 내 신청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평가 대상 사업장을 결정

[사업별 우선순위 적용 방식]

구분	우선순위 항목
이동식기계	▶ 위험기계 제작 연식, 소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 ① 이동식크레인 등 위험기계 제작 연식 ② 위험기계 소유기간 (장기 보유자 우선)
설비공사	▶ 업종, 위험수준, 영세성 등을 종합하여 우선순위 결정 ① 3대 뿌리업종(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여부, 뿌리공정 보유 여부 등 ② 사업장 규모(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③ 공정 노후도 및 위험 공정 보유 수준

» 사업대상 선정 평가

-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 재정평가, ▲ 현장평가, ▲ 원가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

1. **재정평가** 리스 또는 할부를 선택한 사업장은 공단에 등록된 금융사를 통해 리스 또는 할부 가능여부 평가

평가 내용
1 리스 또는 할부 가능여부, 2 금융기관별 지원가능 금리 결정

※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교체 : 리스 or 할부에 한하여 지원
뿌리공정 개선, 리프트 설치 등 공사 : 리스 or 할부 or 보조

2. **현장평가** ▲ 이동식기계는 공단 안전검사장에서 외부 위탁기관을 통해 평가

▲ 설비공사는 공단 직원이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평가

3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 사업 참여기관간 협약체결을 통해 사업완수, 선금 등 사업비 지급, 환수 및 정산, 안전보건 정보의 제공 등 각 기관별 명확한 의무 부여

» 투자 실행(위험기계 교체, 공정 개선)

- 투자기업은 사업기간 4개월 이내(1개월 연장가능) 사업계획서에 따라 설비제작, 장비도입, 기계 교체 등 투자를 진행
※ 사업수행 과정의 총실도 등 점검하기 위한 수시 점검 실시 가능

4 사업 완료 평가

» 투자 완료 평가

- 투자완료보고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등록)한 사업장은 ▲ 현장평가, ▲ 정산평가를 통해 사업 완료 승인 여부를 평가

1. **현장평가** ▲ 이동식기계는 공단 안전검사장
▲ 설비공사는 해당 사업장에 공단 일선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완료 여부를 평가

2. **정산평가** 위탁정산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현장평가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최종 사업비를 정산, 지원 금액을 확정

» 보조금 지급

- 투자완료 평가 결과가 적절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

이동식 기계	총 사업비의 50%를 해당 금융사에 리스 보증금 또는 할부 선수금 등 형태로 지급
설비 공사	▲ 총 사업비의 50%를 해당 금융사에 리스 보증금 또는 할부 선수금 등 형태로 지급 ▲ 총 사업비의 50%에서 착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해당 사업주 계좌로 지급(보조 형태)